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252659(본소), 2023가단25266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권희영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헌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4,270,000원 및 그중 1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4.부터, 나머지 32,27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0.부터 각 202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3,7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본소)

원고는 2022. 3. 4. 피고에게 화성시 C 소재 구건물의 철거 및 토목,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계약서(갑1, 이하 ‘1도급계약서’라 한다)와 업계약서(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도급계약서)인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계약서(갑2, 이하 ‘2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대신 그 공사를 13,000,000원을 지출하여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도급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15,000,000원까지 함께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합계 28,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 미시공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 대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본소 및 반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이에 맞는 2도급계약서와 다운계약서(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도급계약서)인 1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별표 금액 19,265,900원을 건축주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153,777,900원[= 공사금액 369,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미시공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 금액 14,0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대위변제금 19,265,900원 - 원고 지급금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6, 7, 11, 13, 을5-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3.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 2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 3. 4. 50,000,000원, 2022. 3. 29. 50,000,000원, 2022. 4. 11. 50,000,000원, 2022. 4. 14. 50,000,000원, 2022. 5. 19. 64,000,000원, 2022. 5. 26. 20,000,000원, 2022. 7. 5. 15,000,000원, 2022. 8. 23. 50,000,000원 합계 349,000,000원을 지급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2022. 3. 4.자, 2022. 3. 29.자, 2022. 4. 11.자, 2022. 4. 14.자, 2022. 5. 26.자 금액 합계 220,000,000원을 1도급계약서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2022. 7. 5.자 금액을 2도급계약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위 대금 중 2022. 4. 6. 50,000,000원, 2022. 4. 26. 6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2022.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료되어 2022. 8. 19. 신축 건물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4) 미시공된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의 공사대금은 14,300,000원이고, 원고가 직접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갑1, 2, 4, 5, 10, 을2-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도급계약서에는 세부적인 공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개괄적인 공사내역서만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된 공사내역서에는 계약금액을 2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2도급계약서에는 세부적인 공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금액이 합계액 360,746,000원인 점, 1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서에는 아스콘공사 및 대문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는 1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서 기재 공사 이외의 2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다른 공사가 다수 포함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22. 4. 6. 220,000,000원, 2022. 8. 16. 1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2022. 8. 25. 위 2장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350,000,000원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기업은행에 대출관련 자료로 2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2도급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급의무

원고가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미지급 공사대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134,270,000원[= 피고 공사금액 369,270,000원 $\{(350,000,000\text{원} - 14,300,000\text{원}) \times 1.1\}$ - 원고 지급금액 235,000,000원]이다.

마. 소결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2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반환 부분은 그 전제가 달라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고, 미시공 공사대금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대위변제금 부분은 이유 없고,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34,270,000원 및 그중 1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4.부터, 나머지 32,27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0.부터 각 202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별지